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5786 |
|----------|-------|

발의연월일 : 2025. 12. 31.

발 의 자 : 임종득 · 김예지 · 이달희  
서천호 · 김상훈 · 김석기  
이종배 · 강대식 · 추경호  
최은석 · 임이자 · 윤상현  
김미애 · 박성훈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경영체의 등록과 경영개선, 경영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경영체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청년과 도시민을 중심으로 농어업 경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예비농어업인 등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영농·영어를 준비하는 인력에 대한 정책적 지원 제한과 이들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영농·영어 등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중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예비농어업경영체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비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농어촌 정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

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령화 등에 따른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예방과 예비농어업경영체가 안정적으로 농어업 분야에 진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사회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의2 및 제11조의3 신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예비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아니하였으나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영농(營農)·영어(營漁)를 희망하는 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장에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예비농어업경영체 육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비농어업경영체의 육성과 농어촌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비농어업경영체의 창업, 영농·영어 정착 지원 및 이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어업경영체 취업지원 및 공동 영농에 관한 사항
3. 농어업경영체와의 정보교류 등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비농어업경영체의 육성과 정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예비농어업경영체의 육성과 농어촌 정착 촉진을 위한 시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1. ~ 7. (생    략)<br><u>&lt;신    설&gt;</u> | 제2조(정의) -----<br>-----.<br>1. ~ 7. (현행과 같음)<br>7의2. “예비농어업경영체”란 <u>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아니하였으나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영농(營農)·영어(營漁)를 희망하는 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u><br>8. (현행과 같음)<br><u>제11조의3(예비농어업경영체    육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비농어업경영체의 육성과 농어촌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u><br>1. <u>예비농어업경영체의    창업, 영농·영어 정착 지원 및 이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u> |

2. 농어업경영체 취업지원 및  
공동 영농에 관한 사항

3. 농어업경영체와의 정보교류  
등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  
항

4. 그 밖에 예비농어업경영체의  
육성과 정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  
항에 따른 예비농어업경영체의  
육성과 농어촌 정착 촉진을 위  
한 시책에 필요한 행정적·재  
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